

연구보고서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2005. 10

류건식 · 이상우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리말

향후 법정퇴직금제도의 비중감소, 신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유도 등이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자문하여 줌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보험회사는 어떻게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건전성 관련 연금재정 평가관련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연금제도를 설계해 주느냐가 퇴직연금 마케팅 및 컨설팅전략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부담 및 종업원의 수 등에 따라 기업마다 선호하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재정 건전성평가관련 규정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제시함과 더불어 퇴직연금 컨설팅차원에서 어떠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별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차원에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의 특징과 선택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측면에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0월

보험개발원

원장 김 창 수

목 차

요 약	1
I. 서론	14
1. 연구 목적	14
2. 선행 연구	16
3. 연구방법 및 구성	18
II. 퇴직연금 재정평가의 개념 및 절차	2
1. 퇴직연금 재정평가 개념 및 특징	21
2. 퇴직연금 재정평가 단계 및 절차	24
3. 퇴직연금 재정평가체계의 구축 필요성	26
III. 퇴직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	0
1.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분류 및 특징	30
2. 연금재정 평가모델의 장단점비교 및 선택과제	35
3.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	41
4. 시사점	45
IV.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	8
1. 연금재정의 검증측면	48
2. 과거근무채무 상각 및 재정재계산 측면	69
3. 연금지급의 보증측면	72
4. 시사점	79

V. 연금재정 평가모델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28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82
2. 분석결과	83
3. 분석상의 한계 및 시사점	87
VI. 연금재정평가체계 구축방향 및 향후과제	98
1. 기본방향	90
2. 세부방향	92
3. 향후 추진과제	100
VII. 결 론	103
<참고문헌>	115
[부록]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118
2. 퇴직연금감독규정	134

<표 차례>

<표 II-1>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특징	82
<표 II-2> 연금재정평가 절차	52
<표 III-1> 과거근무채무 발생유무에 따른 분류	13
<표 III-2> 연금계산기초율 관련 내용 비교	14
<표 III-3> 미·일의 연금계산기초율 관련 세부내용 비교	84
<표 III-4> 대규모계약집단 및 소규모계약집단 비교	44
<표 IV-1> 부담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수준 비교	84
<표 IV-2> 최저보전급부 산출방법의 특징비교	25
<표 IV-3> 사망률·예정이율 등의 기초율	85
<표 IV-4>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각출	55
<표 IV-5>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비교	16
<표 IV-6> 퇴직연금 재정검증과 관련된 제반규정	26
<표 IV-7> 퇴직연금 재정검증후의 결과처리	86
<표 IV-8> 적립과부족시 각국의 시정조치 비교	46
<표 IV-9> 선진국의 연금계리사 제도 및 역할	56
<표 IV-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연금계리업무전문인력 규정	76
<표 IV-11> DB형 퇴직연금 계리업무전문인력 규정	86
<표 IV-1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수준	07
<표 IV-13>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 비교	17
<표 IV-14> 지급보증기구의 지배구조 비교	37
<표 IV-15> 한국과 일본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비교	57
<표 V-1> 분석대상 및 모델, 분석내용	28
<표 V-2> 기업부담능력 추정 결과	48
<표 V-3> 근로자 연령별 부담금 추정결과	68
<표 V-4> 급부비용 추정결과	78

<그림 차례>

<그림 Ⅱ-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	22
<그림 Ⅲ-1>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분류	33
<그림 Ⅲ-2> 개인평준방식	23
<그림 Ⅲ-3> 도달연령방식	33
<그림 Ⅲ-4> 가입연령방식	43
<그림 Ⅲ-5> 단위적립방식/예측단위적립방식	53
<그림 Ⅳ-1> 급부현가·각출금수입현가·책임준비금·적립금의 관계	15
<그림 Ⅳ-2> 최저적립기준액의 사고	15
<그림 Ⅳ-3> 적립수준의 회복방법	45
<그림 Ⅳ-4> 최저보전급부의 산출	65

요 약

I. 서론

- 연금재정평가체계의 정형화는 향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특히 DB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제도설계를 해주느냐가 컨설팅전략측면에서 중요시됨.
-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부담 및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기업마다 선호하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 선택이 상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DB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연금재정평가관련 규정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설정하여 나갈 것인가를 제시함과 더불어 퇴직연금컨설팅차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 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함.

II. 퇴직연금 재정평가의 개념 및 절차

- 퇴직연금제도의 재정평가란 정부나 기업이 일정한 법적·제도적 틀하에서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을 검증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과정임.
- DB형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와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로 구분됨.

- 이러한 정형화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하에서 보험회사는 기업이 적정한 연금재정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자문해 주어 수탁기능의 제고가 요구됨.
- 퇴직연금의 재정평가단계는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관련된 재정평가단계(사전적 재정평가단계),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재정평가단계(사후적 재정평가단계)로 구분됨.
 - 사전적 재정평가단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유도와 관련된 연금제도설계의 사전적 준비단계
 - 사후적 재정평가단계: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후 기업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 선택단계
- 이에 반해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절차는 ① 기업환경을 고려한 DB형 선택절차, ②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절차, ③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절차 순으로 이루어지게 됨.
 - 재정평가체계 구축필요성: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화기반구축, 연금재정 검증체계의 선진화지향,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시장 컨설팅능력 강화, 선진형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전환대비 등

III. 퇴직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

□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 분류 및 특징

-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형은 개별기업의 연금수급상황(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시나리오별에 따라 평가하여 준다는 점에서 기

업의 입장에서는 평가모델의 선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함.

- C.L. Trowbridge의 분류방법 등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요 특징은 연금급부액과 할인율은 독립적이라는 가정(극한방정식), 퇴직·사망 및 신규가입자 등의 상황이 매년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정상상태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임.
- 적정성 평가모델: 개인평준방식, 도달연령방식, 일시납적증방식, 예측단위적립방식, 종합보험료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모델이 존재

□ 연금재정 평가모델의 장단점 비교 및 선택과제

- 부과방식: 기업도산시 수급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연금수리의 장기추계가 불필요하고 연금제도시행초기에 보험요율이 낮아 시행하기 용이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 도달연령방식 : 고령 근로자가 많은 경우 제도발족후의 초기보험료가 기업의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높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강하다는 특징이 존재함.
- 가입연령방식: 인플레이에 대응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액을 인상할 때에 비교적 대처가 용이하며, 고령자의 보험료각출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존재함.
- 종합보험료방식 : 폐쇄형은 재계산시에 계산기초를 변경하더라도 보험료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고 수정가능하며, 개방형은 책임준비금계산의 대상자를 현재 가입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시 ① 수급권보장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명문화여부 ② 연금급부수준과 기업비용부담

여부 ③ 피보험자집단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할 과제가 존재함.

□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

- 연금계산기초율 관련 측면 : 선진국의 경우 할인율은 장기국채수익율을 기준으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률의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표준값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외의 할인율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자체적인 경험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의 경우 선진국처럼 소규모집단과 대규모집단별로 구분하지 않고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는 자사의 경험율 또는 참조율을 사용
- 연금평가 적정성모델(재정방식)측면 : 규제당국에서 재정방식적용에 대해 규제하는 사례는 없으며, 연금수리관점에서 장래에 걸쳐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방식은 모두 인정됨.
 - 특히 계리사회 등에서 업무표준을 정하여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재정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원칙만을 제시함.

IV. 퇴직연금 재정의 건전성 평가

□ 연금재정의 검증측면

- 연금재정의 검증규정측면 : 미국은 재정검증을 통하여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본 및 영국 역시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해 재정검증을 실시함,
 - 우리나라는 매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책임준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적립과부족시의 조치측면 : 일반적으로 적립부족시 일정기간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은 적립부족액비율에 따라 상각기간에 차이를 두고, 미국은 발생원인에 따라 상각기간에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적립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연금재정의 검증주체측면 : 미국 등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금수리개념 부족 등으로 보험계리사의 역할 규정이 미약함.

□ 과거근무채무(PSL) 상각 및 재정재계산 측면

- 과거근무채무 상각측면 : 미국의 경우 30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7년~20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은 단기간에 과거근무채무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과거근무 채무의 100분의 60만을 일정 기간내에 상각하도록 규정
- 재정재계산 측면 : 통상 3년~5년을 주기로 부담금을 재계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3년에 1번, 일본은 최소한 5년마다 1번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재계산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연금지급의 보증측면

- 제도 종료시에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부 필요액을 우선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연금지급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로 임의가입방식의 국가들은 정부에서 Take-over방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들은 민간기구에서 Buy-ou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1998년도에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규정(5,000만원) 등에 의해 부분적 수급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업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보호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연금지급급부공사(PBGC)와 같은 별도의 수급권보증기구 설치 검토가 요구됨.

V. 연금재정 평가모델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 분석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는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계약집단보다는 300명이하의 소집규모계약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기업연령방식 등 5개의 적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1인당 부담보험료, 급부비용, 연령대별 보험료수준 등을 산출함으로써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모델선택시의 제반시사점을 모색함.
- 분석가정으로는 50세부터 54세까지의 연령대별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을 가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연금수리적 접근방법하에 분석하되, 부채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함.

분석대상 및 모델, 분석내용

	분석대상	분석모델	분석내용
내용	소규모계약집단	5개의 적정성모델	급부비용 및 부담보험료, 고연령시의 부담금 추정 등
특징	승급률 및 탈퇴율 미감안	가입, 도달, 일시납, 종합보험료 방식적용	모델별 차이비교

□ 분석결과

- 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 단기에는 모델Ⅲ(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I (도달연령방식), 모델 V(일시납적증방식)순으로 1인당 보험료수준이 높게 나타남.
 - 단기와 중기 차이를 비교하여 볼 때 모델 I (도달연령방식)의 경우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경과 할 수록 부담보험료의 증감폭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초년도 기업부담이 없는 기업일수록 모델Ⅳ인 폐쇄형 종합 보험료방식의 선택이 바람직하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부담의 감소폭을 고려할 때는 모델Ⅰ과 모델Ⅴ의 선택이 바람직함.

○ 피보험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 모델Ⅰ(도달연령방식)은 모델Ⅱ(가입연령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보험료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층에 감에 따라 부담금의 증대는 모델Ⅰ(도달연령방식), 모델Ⅱ(가입연령방식), 모델Ⅲ(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Ⅴ(일시납적증방식)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고연령층 보험료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도달연령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기업의 경우 고연령층이 많을 경우 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뚜렷할 것임.

○ 급부비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 기간이 1년차에서는 모델Ⅰ(도달연령방식)에서 가장 급부비용이 큰 반면 모델Ⅴ가 가장 급부비용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5년차에서는 모델Ⅱ(가입연령방식)이 약 2,139만원으로 급부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모델Ⅲ(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이 972만원으로 급부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분석상의 한계 및 시사점

- 부채측면 뿐만 아니라 자산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대규모 계약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재정방식 등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분석상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는 추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 데이터의 입수가 가능해질 때, 그리고 선진국처럼 다양한 분석모델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제반문제가 해결되고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컨설팅차원에서 설계하여 줄 필요가 존재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속성,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퇴직연금 재정설계모형의 선택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음.
- 문제는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부담 등 이외에도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은 다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VI. 연금재정 평가체계 구축방향 및 향후과제

□ 기본방향

-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확립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토과제임.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연금재정 평가체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 개별기업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
 - 연금수리개념에 입각하여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필요성이 존재
 - 자율적인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에 관련된 운용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퇴직연금리스크중시의 감독정책 수립 필요
 - 개별기업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

□ 세부방향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측면>

- 연금재정의 검증규정측면
 -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적립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바

람직함.

- 특히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각출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수준에 따른 적립부족 해소방법을 기간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정비측면

-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더불어 요구됨.

○ 과거근무채무 상각측면

- 장기적으로 적립금의 100% 범위에서 연금적립비율에 따라 상각 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

○ 적립과부족시 조치측면

- 최저각출의무 및 추가각출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최저각출의무의 경우 각출관리계정을 설치하여 「통상비용 + 미적립채무의 상각」을 최저한의 각출로 규정함과 더불어 세법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각출금의 연간한도액 규정이 필요함.
- 연금제도가 정착한 이후에는 비계속기준에 대한 추가각출의무를 두어 일정한 연금부채를 상회하게 되면 각출휴일을 설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연금재정의 재계산조치 및 연금지급측면

- 연금재정의 재계산주기를 최소한 3년에 한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연금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제도적

으로 보증해 주는 사후적 연금재정 건전성규제제도로서 연금지급 보증장치 마련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측면>

○ 연금계산기초율별 규제기준안의 마련

- 부담금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로부터 예상되는 장래의 기대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연금사업자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적립금 산출에 사용되는 이율은 장기 시장 예측에 적합한 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적립금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장여건의 고려가 바람직함.

○ 연금재정 평가모델 관련 측면

- 단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표준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적정성 평가모델적용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적정성평가 모델적용을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규정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은 미리 선택한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대비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의 재검토 규정마련이 필요함.

○ 연금재정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 필요한 연금재정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규제 감독적측면에서 제시됨으로써 적절한 연금재정이 평가되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기업별 DB형 연금재정 평가능력제고

-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한 DB형 설계를 차별화하면서, 기업의 특수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변경방식연구 등이 보험회사 컨설팅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향후과제

○ 연금재정 평가체계 구축의 추진과제 측면에서는 연금수리능력이 있는 연금계리사(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전문 연금계리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또한 향후 퇴직연금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연금수리의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금재정의 검증가이드라인이 보험계리사회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과 운용문제는 결국 연금ALM분석기법의 선진화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를 다양화시키는 작업이 연금ALM분석기법의 선진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부채의 평가 및 연금자산의 평가, 연금비용의 산정 등을 위해 퇴직연금회계처리기준의 마련이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됨.